

취창업진로위원회 운영규정

전문제정 2019.04.17., 개정 2020.03.12., 개정 2020.04.23. 개정 2022.03.04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학생들이 취창업 및 진로지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, 각종 심리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 폭넓은 자기 이해와 건전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취창업진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취창업 업무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수립
2. 학생의 취창업 및 진로지도 방안
3. 취창업관련 프로그램 및 상담관련 프로그램
4. 기타 취창업 및 상담과 관련된 제반 사항<호 옮김 4 → 9, 2020.03.12.><호 옮김 9→ 4 2020.04.23>
5. <삭제 2020.04.23.>
6. <삭제 2020.04.23.>
7. <삭제 2020.04.23.>
8. <삭제 2020.04.23.>
9. <삭제 2020.04.23.>

제3조 (구성)

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계열(전공)장, 학과장이 당연직으로 하며, 취창업과 진로지도 및 상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4조 (임기)

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위원장은 취창업 및 진로지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
제6조 (회의)

-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

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.

제7조 (간사)

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산학협력센터 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8조 (회의록의 작성)

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9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취업진로위원회 운영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.

부 칙(2020.03.1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4.23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